

공 고

●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-014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12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 : 오* 등 3명

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4. 의견제출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의견제출장소 :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(☎ 02-6735-8133/ FAX 02-6735-8144 / E-mail :hsham0302@korea.kr

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주민등록번호/ 법인등록번호	고지주소	법 령 위 반 사 항	과 태 료 금 액(원)	스 팸 U R L 전 화 번 호	광 고 내 용
1	오*	620409-1*****	경기도 수원시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15,000,000	15**-6676	대리 운전
2	최*형	901025-1*****	서울시 금천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3,750,000	010-**-15-1025	홍보 대행
3	주식회사 에*치엘컴퍼니	131111-0*****	경기도 성남시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	7,500,000	010-**-56-1081	주식